

최종 수정일	2024.09.16.
문서 관리자	구매기획팀

평화그룹

임직원 공정거래 가이드라인

2024.09.16.

평화그룹 임직원 공정거래 가이드라인

- 평화그룹은 모든 사업 활동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을 이행하고 공정거래 및 반독점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,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- 본 '평화그룹 임직원 공정거래 가이드라인'은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인지하고, 법규 위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- 본 가이드라인은 평화홀딩스, 평화산업, 평화오일실, 피에프에스, 피엔디티, 평화기공, 평화씨엠비, 평화이엔지, 창인인재개발원, 엠제이비전테크, 평화인디아, 평화아메리카, 천진 평화기차배건유한공사, 천진평화기공기차부건유한공사, 천진평화엘라스틱의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재직중인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.
- 전 임직원은 본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합니다.
- 본 가이드라인은 평화그룹의 정책 및 기준 변경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.
- 본 가이드라인과 국내외 관련 법규의 내용이 상충될 때에는 보다 법규가 우선 적용됩니다.

제 1장 법규 준수

평화그룹의 임직원은 반독점 및 공정거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. 이를 위해 평화그룹의 관리자는 법적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여 모든 임직원에게 교육하고, 관리·감독 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.

[1] 반독점 규제 준수

- 평화그룹의 임직원은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공정거래 및 반독점 법규를 준수합니다.
- 경쟁을 제한하거나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담합, 가격 조작, 시장 분할 등이 엄격히 금지됩니다.
- 경쟁사와의 거래 및 커뮤니케이션에서 투명성을 유지하며, 불법적인 정보를 공유하거나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.

[2] 국제 법규 준수

- 평화그룹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법률적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.
- 해외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각국의 반독점 및 공정거래 법규를 이해하고 이를 사전에 반영한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.

제 2장 불공정 거래 금지

평화그룹은 모든 형태의 불공정 거래를 금지합니다. 평화그룹의 임직원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.

[1] 담합 및 부당한 거래 조건 강요 금지

- 가격 담합, 시장 배분, 공급 제한 등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
[2] 시장 지배력 남용 금지

- 시장에서의 지배적 위치를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거나, 특정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.

[3] 부당한 거래 차별 금지

- 평화그룹의 임직원인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금지하며,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거래 조건을 설정해야 합니다.
- 협력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며, 경쟁력 있는 거래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.

제 3장 공정한 계약 체결 및 관리

평화그룹의 임직원은 모든 거래 및 계약 체결 시 상호 신뢰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. 이는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, 일방적인 계약 변경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.

[1] 투명한 계약 과정

-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되며, 계약 조건은 상호 협의 하에 투명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.
- 계약 체결 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, 양 당사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.
- 가격 담합, 시장 배분, 공급 제한 등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
[2] 계약 이행 모니터링

- 평화그룹의 관리자는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이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부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.
- 시스템들 통해 계약 불이행이나 불공정한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,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.

제 4장 공급망에서의 공정거래

평화그룹의 임직원은 협력업체와의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며,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을 관리합니다.

[1] 협력업체 평가 및 관리

- 평화그룹의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협력업체의 공정거래 준수 여부를 평가하며, 공정한 기준에 따라 거래를 유지 또는 조정해야 합니다.
- 평가 기준에는 품질, 납품 기한, 공정거래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- 평가 기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.
- 가격 담합, 시장 배분, 공급 제한 등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
제 5장 내부 감시 및 교육

평화그룹의 관리자는 공정거래 준수에 대한 내부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, 임직원의 공정거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.

[1]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

- 평화그룹의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및 반독점 법규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- 교육 내용은 법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. 이를 통해 공정거래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고, 실무에서의 준수 가능성을 극대화하여야 합니다.

부칙

1. 본 가이드라인은 2024년 9월 16일부로 제정하여 시행한다.